

보 도 자 료

배 포 일 자	2024. 05. 13. (월)	총 8페이지	담당자	변호사/상담원
서울 영등포구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시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2차 가해한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징계하라.**

1.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소통하는 것에 경계나 거부감이 없고 호의적인 접근에 취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간음할 목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접근했다.

피고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행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당황하자 “연인 간에는 성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마음에 든다면 이런 것도 못해주냐.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의 마음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손

쉽게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지배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챌 수 없었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전형적인 그루밍이다.

피고인은 다른 일시에 두 차례나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로 유인해 간음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혼자 보겠다고 하며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다음 친구에게 이를 공유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부모님이 알게 되면 일이 커지지”, “당연히 화내시지 그럼 칭찬하겠어? 내 말 좀 이해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주도면밀한 모습도 보였다.

두 번째 공원 화장실 간음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고, 폭력적이고 강제로 삼입행위 하여 피해자의 질이 10cm가량 찢어지는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를 보고도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에 버려둔 채 도망갔다. 계속된 출혈로 온통 피로 뒤덮이게 된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 전 간신히 신고함으로써 천만다행으로 사망을 면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발견이 조금만 늦었어도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말 그대로 피해자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채 짐승만도 못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는 수혈,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혼자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못했다. 구강성교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냈고, 벽에 머리를 박고 차에 뛰어드는 등 자해·자살 시도를 하여 폐쇄 병동에 입원해야 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2.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의 부적절한 발언, 합의 강요와 인권침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혐의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관계를 맺자고 해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들이 드러날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7년간 장애인 등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 가족을 향해 “정말 질이 좋지 않은 고등학생은 소년보호 형사처벌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없다. 그러니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렇게 나쁜 학생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거다. 이 사건 외에도 지적장애인 사건이 많다. 그리 특별한 경우도 아니다.”,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들도 힘들어서 상담치료 받고 한다. 피해자 가족만 힘든 상황이 아니니 그것도 알아야 한다.”, “피해자 가족도 슬프지만,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저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슬플 수 있다. 이해해라.”,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 피고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생의 일상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냐?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 “민사소송으로 하려고 합의 안 해주느냐? 생각보다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피고인 아직 살아갈 날이 많다. 이해해 줄 수 없느냐?” 고 하며 합의를 강하게 종용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만을 바랐고, 합의 의사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도 피고인 가족들은 피해자 부모님의 전화번호까지 몰래 취득해 합의를 요구하는 불법·부당한 짓까지 행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 사실도 재판부에 알렸다.

그러나 재판장은 선고를 앞두고 돌연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소년부 송치의 경우 최대 처분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제10호)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고 범죄기록도 남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 범행 횟수가 한 번에 그치지 않아 피고인을 진정한 의미의 초범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성착취 그루밍 수법을 간파하지 못한 채, 성기 파열 범행 이전의 성관계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심각한 출혈로 의식을 잃을 수 있었던 피해자를 범행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 이해하는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내세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것이다. 합의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으로 피고인을 선처한 것이라고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도 재판장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재판부 재량을 인정해 전부 기각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 결과를 무시한 대법원의 회신

2022년 12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법률지원단 소모임(강영인, 김병희, 박숙란, 이기연, 이시정, 최석봉, 추선희 변호사)을 구성하였다. 본 센터 법률지원단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장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였다.

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회신

2022년 7월, 피해자 가족은 국민신문고에 재판장이 법정에서 행한 부당한 언행, 피해자에 대한 합의 중용, 인권침해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나 부당한 언행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불편함이 있었다면 양해 바란다고 회신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이행 권고 결정

2022년 7월, 피해자 가족은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은 2023년 1월 법정녹음 내용을 확인하고자 대구지방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지만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 관련 당시 법정에서 출석하였던 참고인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등 관련 조사를 촉구하고,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재판장)의 진술서, 재판 당시 재정한 참고인의 진술, 공판조서, 대구고등법원 국정조사 영상 등을 토대로 진정사건을 조사했다. 재판장은 자신의 발언이 전형적인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이었으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행한 법관의 발언은

진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202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재판장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법관이 재판 도중 행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재판절차에 관한 발언이라든가 소송지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발언 등을 넘어서 재판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 재판 당사자 등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발언 등은 재판 당사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발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나아가 해당 재판장은 피해자가 자신의 발언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재판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를 하였고 불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재판장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법정언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법관징계 청원에 대한 대법원의 회신

2023년 12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대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였다. 해당 재판장의 반인권적 행위와 부당한 처사는 「법관징계법」 제2조 징계 사유인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하는 부당 행위이므로 다시는 법정에서 법관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관징계 청구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3월, 대법원은 해당 재판장의 소속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대법원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답변하

고, 대법원도 이전 2022년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회신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재판장에 대한 징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법관이 부당한 법정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는데도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절차는 왜 존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조사와 결정도 무시한다면, 법관으로부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가? 대법원은 이에 답해야 한다.

4. 대법원은 해당 재판장을 징계하라!!

해당 재판장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하게 종용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나서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일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뿐더러 법관이 피해자를 2차 가해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징계 사유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징계 청원을 받고도 해당 재판장에 대한 징계나 제재를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무시한 채 성의 없는 답변을 하였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4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이 사건에 불잡혀 붕괴 되다시피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대법원의 회신에 분노를 넘어 절망을 금치 못하며, 법관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대법원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원통함이 풀릴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법관을 징계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언론들에서도 많은 관심과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의견서 1부.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아동·청소년/사이버/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과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십 대 여 성 인 권 센 터